

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
2026년 3월 4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협약을 반영하고, 상위법 필수조례 정비관련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을 「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가능 횟수 확대(안 제13조제5항제1호)
 -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(3회) → 10일(5회)
- 공무원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(1일) 신설(안 제13조제9항)
-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변경(안 별표3)
 - 배우자 출산 시 : 10일 → 20일
 - 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→ 25일)

4. 예고기간

○ 예고기간 : 2026. 3. 6. ~ 3. 11. (5일간)

○ 예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조례안 예고)

5. 조례안 : 붙임

6. 의견 제출

○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다. 제출서식: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

조례 개정안	찬·반 여부 및 사유
	- 구체적으로 기술 -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

라.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7 의회사무과
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
- 전화 061)390-7015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제1호 중 “5일(3회)”를 “10일(5회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공무원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9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이 포함된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휴가를 사용해야한다.

제3조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3조 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20 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)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